#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678

발의년월일: 2019년 6월 19일 제 안 자: 기획경제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○ 개정안이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하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에 '노동관련 단체'가 노동자가 조직한 '노동단체'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, '노동단체'에 대한 지원만으로 제한된 현행 조례의 제명과 지원 대상 등을 "비영리법인·단체"까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노동단체 및 법인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 확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수정함.
- 지원대상을 단체·법인으로 수정함(안 제3조).
- 지원범위를 단체·법인으로 수정함(안 제4조제1항).

#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"를 "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당하는 자에게"를 "해당하는 단체·법인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총 연합단체인"을 "총연합단체인"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장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"를 "시장 은 제3조의 단체·법인이"로 하고, 같은 항의 호 "5."를 "3."로 한다.

#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	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	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시관계
조례	<u> </u>	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
제3조(지원대상) 보조금을	제3조(지원대상) 서울특별	제3조(지원대상) 서울특별
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총	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	<u>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</u>
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	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	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	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하나에 해당하는 단체、
에 해당하여야 한다.	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
		<u>수 있다.</u>
<u>〈신 설〉</u>	l. <u>총 연합단체인</u> 노동조합	l. <u>총연합단체인</u> 노동조합
	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	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
	2.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	2. ~ 3. (개정안과 같음)
	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	
	노사관계 비영리법인	
	3.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	
	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	
	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	
제4조(지원범위) ① 서울특	제4조(지원범위) ① <u>시장은</u>	제4조(지원범위) ① <u>시장은</u>
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	제3조의 노동단체가	제3조의 단체、법인이
한다)은 제3조의 노동단		
<u>체가</u> 다음 각 호의 어느		
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		
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		
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		
수 있다.	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	1. ~ 2. (개정안과 같음)
<u>3.</u> (생 략)	<u>5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	<u>3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
4. <u>제3조</u> 에 따른 지원대	4. 제3조제1호	4. 제3조제1호
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		
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	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	5. (개정안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
###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"를 "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·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
- 2.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
- 3.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"를 "시장은 제3조의 단체·법인이"로 하고, 같은 항제4호 중 "제3조"를 "제3조제1호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<u>조례</u>	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
제3조(지원대상)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 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에 해당하여야 한다.	제3조(지원대상)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、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(신 설)	1.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2. 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 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 관계 비영리법인 3.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
제4조(지원범위) ① <u>서울특별시</u> <u>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</u> <u>3조의 노동단체가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	제4조(지원범위) ① <u>시장은 제3</u> <u>조의 단체、법인이</u>

- 1. ~ 3. (생 략)
- 4.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노 4. 제3조제1호-----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 자금 지원 사업
- 5. (생략)
- ② (생 략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5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